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0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안도결 · 양부남 · 박민규
전진숙 · 김영환 · 정태호
정일영 · 김태년 · 임호선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중

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생 략) <u><신 설></u>	제2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u>